

☐ 국내

☐ 국제

☐ 소형

☐ 정기편 노선

☐ 부정기편 운항

허가 신청서
(신고서)

※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부정기편 운항의 경우에는 신고서이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정기편 노선허가 15일 부정기편 운항허가 10일 (군공항은 10일) 부정기편 운항신고 5일
신청 (신고)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 (신고) 내용	개설노선명 또는 항행의 경로		
	운항개시예정일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3항,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 정기편 노선 ☐ 부정기편 운항 을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가. 정기편 노선허가 신청 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각 호의 서류 나. 부정기편 운항허가 신청 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1호의 서류와 제3호가목·다목 및 사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소형항공운송사업자 가. 정기편 노선허가 신청 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나. 부정기편 운항신고 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3호가목·다목 및 사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수수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	--	--------------------------------

허가 관련 조치해야 할 사항

- 허가를 받으신 후 사업개시 전까지 운임 및 요금의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신청서에 적은 운항개시예정일까지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국제선 허가 신청 시, 전화번호 : 044-201-4212), 항공산업과(국내선 허가 신청 시, 전화번호 044-201-42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